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, 동료 위원님 여러분!
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.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상정하는 경우, 시의회 의결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누락되어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, 또한 시의회에서 삭제한 안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재상정하는 경우,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의회의 비효율적 심의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

- 주요 내용은 제11조제1항 중 “시장은”을 “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”로 변경 하여 공유재산 사전 절차 이행을 의무화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,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- 본 개정안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유재산 상정과 시의회 삭제 안건의 동일 내용 반복 재상정을 방지해, 효율적인 시의회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